

해월당

【 해월당 】 정 보 공 개 서

해월당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

정보공개서 등록 번호	20240651
정보공개서 최초등록일	2024.05.10
정보공개서 최종등록일	2024.05.10

<주 의 사 항>

- ◇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 ◇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는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가맹본부 주소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봉화로 258-40		
대표 전화번호	052-224-7700	팩스번호	052-224-9200
가맹본부 홈페이지	-	가맹본부 이메일	kilsoung@hanmail.net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 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 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 X. 별지

◇ 당사에서 제공하는 정보공개서에는 정확한 내용 및 별지 서류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개하는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에서는 당사의 영업비밀 및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내용의 일부가 공개되지 않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주 소			
(주)해월당	해월당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봉화로 258-40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17.09.08	2017.09.18	최제우	052-224-7700	052-224-9200
	법인등록번호	230111-0281681	사업자등록번호	641-81-00815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 당사의 특수관계인 중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 경영 경험이 있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대표이사	최제우	해월당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봉화로 258-40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최제우	052-224-7700	052-224-9200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사내이사	신재용	해월당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봉화로 258-40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최제우	052-224-7700	052-224-9200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감사	황길성	해월당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봉화로 258-40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최제우	052-224-7700	052-224-9200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 당사는 바로 전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있습니다.

인수·합병 여부	기업명	영업표지	인수·합병일	주 소	대표자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을 인수함	해당없음	-	-	-	-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의 가맹사업 일부를 인수함	해당없음	-	-	-	-
다른 기업에 가맹사업 일부를 인도함	해당없음	-	-	-	-
다른 기업이 가맹본부를 합병함	해당없음	-	-	-	-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의 내용

◇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해월당	
상 호	해월당 OO점	당사는 일반적으로 해당 지역명이나 입점하는 건물명을 사용하여 가맹점 명칭을 부여합니다.
상표(서비스표)	해월당	등록: 제40-1759805-0000호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1년	1,077,097	835,229	241,868	3,469,733	121,914	110,503
2022년	4,600,085	3,494,142	1,105,943	6,885,427	399,039	364,074
2023년	18,320,880	13,319,250	5,001,629	8,943,364	296,422	95,805

◇ 근거자료는 별지 2의 재무제표, 손익계산서입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임원	최제우	대표	2017.09~현재	해월당 대표	업무총괄
가맹사업 관련임원	신재용	사내이사	2017.09~현재	해월당 사내이사	
가맹사업 관련임원	황길성	감사	2022.09~현재	해월당 감사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3년 12월 31일	3	0	39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해월당] 다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구분	기간	사업내용
----	-------	----	----	------

해당없음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건본 이미지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존속기간 만료일 (가맹본부의 사용기간)
해월당 (상표권)		2021.4.15. 출원 2021.8.4. 등록	출원 40-2021-0078390 등록 40-1759805-0000	주식회사 해월당	2031.08.04 (2031.08.03)
권리 범위	가맹점 상호, 영업표지, 실사, POP 등 당사가 허락한 상품·용역				

◇ 당사는 귀하가 가맹점을 개설하는 경우 가맹계약 목적범위 내에서 위 지식재산권을 사용할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우리 회사의 위 지식재산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I. 가맹본부의 [해월당] 가맹사업 현황

1. [해월당]을 시작한 날: 2021년 5월 1일

(직영점을 시작한 날: 2021년 2월 3일)

2. [해월당] 연혁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의 이름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주식회사 윤연당	윤연당	최제우	-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새초천길 27
주식회사 해월당	해월당	최제우	-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새초천길 27
주식회사 해월당	해월당	최제우	-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등억 알프스로 245
주식회사 해월당	해월당	최제우	21.05.01.~23.08.06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등억 알프스로 241
주식회사 해월당	해월당	최제우	23.08.07~현재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봉화로 258-40

3. [해월당] 업종

영업표지	업종	
해월당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제과, 제빵	빵, 케익, 샌드위치, 디저트, 음료, 과자 등

4. 최근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해월당]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지역	2021.12.31.			2022.12.31.			2023.12.31.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3	2	1	6	4	2	10	5	5
서울	-	-	-	-	-	-	-	-	-
부산	-	-	-	1	1	-	1	1	-
대구	-	-	-	-	-	-	-	-	-
인천	-	-	-	-	-	-	-	-	-
광주	-	-	-	-	-	-	-	-	-
대전	-	-	-	-	-	-	-	-	-
울산	3	2	1	4	3	1	8	4	4
세종	-	-	-	-	-	-	-	-	-
경기	-	-	-	-	-	-	-	-	-
강원	-	-	-	-	-	-	-	-	-
충북	-	-	-	-	-	-	-	-	-
충남	-	-	-	-	-	-	-	-	-
전북	-	-	-	-	-	-	-	-	-
전남	-	-	-	-	-	-	-	-	-
경북	-	-	-	-	-	-	-	-	-
경남	-	-	-	1	-	1	1	-	1
제주	-	-	-	-	-	-	-	-	-

5. 바로 전 3년간 [해월당] 가맹점 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1	0	2	0	0	0	2
2022	2	2	0	0	0	4
2023	4	1	0	0	1	5

6. [해월당]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 해당사항 없습니다.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지역	2023년말 가맹점수	2023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평균 매출액(상한)		연간 평균 매출액(하한)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m ² 당	상한	면적 3.3m ² 당	하한	면적 3.3m ² 당	
전체	5	678,695	3,139	1,524,867	6,823	285,582	3,168	4곳 산출
서울	-	해당없음						
부산	1	해당없음						5곳 미만
대구	-	해당없음						
인천	-	해당없음						
광주	-	해당없음						
대전	-	해당없음						
울산	4	740,146	2,775	1,524,867	6,823	285,582	3,168	4곳 산출
세종	-	해당없음						
경기	-	해당없음						
강원	-	해당없음						
충북	-	해당없음						
충남	-	해당없음						
전북	-	해당없음						
전남	-	해당없음						
경북	-	해당없음						
경남	-	해당없음						
제주	-	해당없음						

◇ 당사의 가맹점사업자 연간 평균 매출액은 가맹점별 POS(Point of Sales)상의 매출액을 근거로 하여 기재한 것입니다.

◇ 바로 전 사업연도 기준 전국의 가맹점 중에서 6개월 이상 영업한 가맹점의 매출액을 1년치로 환산하여 전체 연간평균 매출액을 추정하는데 근거수치로 포함하였으나, 실제 영업기간이 6개월 미만인 1곳(울산대점) 매출액은 1년치로 환산하여 전체 연간평균 매출액을 추정하는데 근거자료로 사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여 매출액 추정 근거자료로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표에서 기재한 연간 평균 매출액은 전체 가맹점 수 5개가 아닌 실제 4개 가맹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추정 자료임을 알려드립니다.

◇ 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별로 물품 공급액, 시장상황, 점주의 노력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미래 수입과 같지는 않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라 당사가 매출액 추정에 사용한 자료는 당사의 본사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당사를 방문하여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8. [해월당]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 [해월당]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3	5개	588일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 당사는 가맹지역본부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구분	수단	기간	지출 비용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비고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합계	해당없음					
광고	해당없음					
판촉	해당없음					

11. 가맹금 예치

◇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우리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 지점 또는 부서	주소	전화번호
우리은행	화명동점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대로 42 우리메디컬센터	전화 051-361-6161

◇ 귀하는 당사와 계약 체결함과 동시에 우리은행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예치 방법은 가까운 우리은행 지점을 방문하시어 작성한 예치신청서와 함께 예치가맹금을 예치하시거나, 우리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s://svc.wooribank.com/>)에 접속하여 가맹금을 예치하실 수 있습니다(공인인증서 필요) 자세한 예치방법은 우리은행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문의전화(1588-50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귀하는 [우리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 당사는 가맹금 예치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조치 대상	의결번호 (사건번호)	위반법령	위반내용 (위반법조문)	조치일자	조치내용
-	-	-	-	-	-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로 받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원고	피고	사건번호	최종 법원명	판결(선고)일자	청구 취지 및 내용	판결 또는 화해 내용
-	-	-	-	-	-	-

3. 형(刑)의 선고

◇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피고	사건번호	선고 법원	선고 일자	죄명 및 범죄사실	선고 내용
-	-	-	-	-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 귀하가 [해월당]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기타 비용 (인테리어, 주방설비 등)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27,500				오픈 전 해지시 가맹계약체결에 소요된 실제 비용 및 당사에서 정한 기준의 위약벌 공제 후 반환
가맹비	22,000	가맹계약 체결일 다음날 까지	영업개시 이전 까지 계약해지	개점 이후	
최초교육비	5,500	가맹계약 체결일 다음날 까지	교육 미시행시	교육시행 후	

2)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 보증금은 계약 종료시 잔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없음)

구분	금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총계	5,000			
계약이행 보증금	5,000	가맹계약 체결일 다음날 까지	- 가맹금, 물품대금 미지급 - 계약종료 후조치 (영업표지철거 등 원상 회복의무)의 미이행	계약의 종료일 또는 해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이행보증금으로 잔존 채무·손해배상액을 정산하여 잔액을 상환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합계	32,500
가맹비	22,000
최초교육비	5,500
계약이행보증금	5,000(VAT 없음)

◇ 귀하가 일방적인 변심에 의하여 개점 전 해약을 요청할 경우 당사가 지급받은 금액 중 반환하여야 할 금액에 대해서는 다음 위약금 규정에 따라 상계처리 후 반환합니다.

1. 계약체결 또는 금전 지급 후 24시간 이내: 정보공개서상의 예치금의 30%
2. 계약체결 또는 금전 지급 후 24시간 이후 10일 이내: 정보공개서상의 예치금의 50%
3. 계약체결 후 10일 이후 가맹점 오픈 이전: 정보공개서상의 예치금의 100%
4. 계약체결 후 발생하는 인테리어, 설비공사비용: 실제 발생비용 전액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부가세 포함/30평기준)

구분	지급대상	금액	면적 33㎡당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비고
총 계		334400				
인테리어	협력업체	137,500	4,583	계약시 50%/오픈전 일 50%	공사전 계약취소시	30평 기준
사인물외	협력업체	11,000				-
설비류(장비등)	가맹본부	121,000				-
집기류	가맹본부	15,400				
초도물품	가맹본부	33,000				
인테리어자체시 공시	가맹본부	16,500	550	계약시 전액	도면,설계,감 리 진행 전 계약취소 시	인테리어 자체시공시 도면,설계비 및 감리비용등

◇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별도비용: 철거,전기증설,포스,CCTV,외관공사,테이블,의자,점포임대비용,인허가비용,주방덕트,외부테라스,냉난방기,소방설비및허가 등 견적 외 품목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가맹점사업자	담당자 배정 → 상담을 통하여 가맹희망자가 원하는 지역 파악 → 현장 조사 등 시장 분석 → 최적의 입지 도출 → 가맹희망자에게 최종결정 ※ 가맹희망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새로운 입지를 정할 수 있으나 영업이 늦어지는데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신용불량자가 아닐 것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만19세 이상일 것, 보건증 발급 가능자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만18세 이상일 것, 보건증 발급 가능자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 [해월당]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다음 아래 표에 기재된 물품내역 이외에 다른 품목도 추가할 수 있으며 거래상대방을 추가적으로 제한 할 수 있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 물품의 상세내역은 [별첨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8) 가맹점 등 분납 제도

◇ 당사는 가맹금 분할하여 납부하는 절차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특히 광고분담금에 대한 세부 분담기준은 V.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9.광고 및 판촉활동을 참고하십시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상표사용료	가맹본부	월 22만원	매달 5일	-	-	
광고분담금	가맹본부	광고의 성격에 따라 가맹점사업자 부담 50%~70%	계산서 발행 후 5일 이내	광고 미시행	광고 시행 후	
판촉분담금	가맹본부		협의	판촉 미시행	판촉 시행 후	
교육훈련비 (보수교육)	가맹본부	협의	협의	교육 미시행시	교육 시행 후	
점포환경 개선비용	지정업체 (미정)	가맹본부 부담액을 제외한 금액	협의	-	-	VII-1참조

시설, 각종 기기의 교체, 보수비용	지정업체 (미정)	협의	협의	-	-	
POS 사용료	협력업체 (미정)	렌탈	매장별 상이	-	-	
지연이자	가맹본부	연20%	지급기간의 경과일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	-	-	금전 지급 기일 경과시

◇ 위 내역은 당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변경 및 추가될 수 있습니다.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3)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은 추정금액으로 2023년도에 당사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한 구입요구품목의 매출액에서 해당 품목의 구매금액 합을 뺀 차액을 6개월 이상 운영한 가맹점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 경우 전년도에 구입하여 금년에 공급하는 부분, 금년에 구입하였으나 아직 공급하지 않은 부분, 자체생산품목에 대한 차액가맹금 미포함 등으로 인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독 항목	내 용	시기	비고
재고관리	실재제고 수량을 조사하여 장부상 재고와 비교	정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회계처리	가맹점사업자의 매출누락에 대한 회계 조사 실시	정기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 귀하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는 귀하가 부담하셔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 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 승계 여부

◇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양도 전에 제품대금, 보증금 등 모든 채권채무관계에 대한 정산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 당사가 가맹점운동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야 하며, 이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며, 가맹본부가 대체 수단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가맹본부에게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 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 가맹점사업자가 운영하는 [해월당]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귀하가 당사에 지급해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2개월 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양수인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비, 계약보증금은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위의 조건에도 불구하고 양수인이 당사에 완전한 계약기간으로 계약 체결을 요청하는 경우, 양수인은 당사와 신규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 경우 양수인은 당해 가맹 다른 신규 가맹점사업자에 준하는 조건으로 그에 해당하는 가맹비, 교육비, 계약이행보증금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가) 가맹점사업자와 당사와의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가맹점의 운영을 즉시 중단하고, 당사의 상호, 상표, 서비스표, 영업비밀, 노하우, 설비 및 당사로부터 지급받은 운영매뉴얼, 규정집, 전단지, POS시스템 등의 사용도 중단하여야 합니다.

나) 또한, 당사를 표시하는 모든 공작물, 건물 내외 장식, 간판 등 기타 상징물을 해지일 또는 계약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 철거하여야 하며, 운영매뉴얼 등 당사로부터 취득한 일체의 자료는 당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 만일 계약 종료 이후에도 당사를 표시하는 시설물 철거 등이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는 직접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그 철거를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당사는 이에 소요된 시설물 철거비용을 보증금에서 차감하거나 상환을 귀하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 종료 이후에는 당사에 지급할 물품공급대금, 손해배상금 등 모든 금전채무의

지급의무를 즉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마) 가맹점사업자가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자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반품하고자 하는 경우, 물품의 재고량, 오.훼손 등 관리상태, 유통기한 등을 고려하여 일정범위 내 (10%~90%)에서 반품이 가능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당사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이 영업양수도로 인하여 계약이 종료(해지)된 경우에는 신규 가맹점사업자에게 인수인계 등 필요한 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 귀하가 [해월당]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하는 품목은 [별지1,2]에 첨부하였습니다.

구 분	품 목	규 격	거래형태	거래 상대방	차액가맹금 수취여부
	별지[1,2] 참고				

2)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 귀하에게 공급하는 상품, 원·부재료의 주요 품목은 [별지3]에 첨부하였습니다.

순번	품목(단위)	공급가격		구분(거래처)
		상한	하한	
	[별지3] 참고			

3)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 귀하가 [해월당]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1) 당사는 [해월당]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대가 지불	경제적 이익의 내용	금 액	비 고

2) 당사가 [해월당]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별지4 참조]

◇ 귀하가 당사에서 승인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별지4]의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

된 거래상대방(고객)에 대해 상품·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상대방 (고객)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 고
경쟁업체	당사 또는 지정업체에서 공급받은 상품 및 메뉴	가맹계약서 제29조 [원·부재료 등의 조달과 관리] ⑦ '을'은 공급 받은 원·부재료 등을 '갑'의 허 락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 거나 대여할 수 없다.	1회 위반 : 구두 경고 2회 위반 : 서면(2회이상) 시정요구 3회이상 위반 : 계약 해지	
다른 가맹점사업자				

-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 ◇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별지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품·용역명	권장가격 (단위: 원)	가격 통보 방법	비 고
[별지 4] 상품판매 리스트 참조		제한없음	

- ◇ 귀하가 당사의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베이커리 카페	해월당	-

2) 영업지역 설정기준

◇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점포를 기준으로 반경 500m 단, 특수상권(백화점, 마트, 시장, 지하상가, 공항, 호텔 등)은 행정구역과 상관없이 별도의 영업지역으로 인정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 ①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 ②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 ③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과 [해월당]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 당사는 [해월당]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 당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	33%	67%	0%	0%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	0%	0%

① 오프라인 전용 상품이란 가맹점에서만 판매하는 상품을 의미합니다.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가맹점 전용상품 수/해당 영업표지의 상품 수)

오프라인 전용상품은 직영점에서 모두 판매하고 있어 위 비중에서 제외하였습니다.

② 온라인 전용 상품이란 가맹본부가 온라인에서만 판매하거나 가맹본부가 온라인 플랫폼에만 공급하는 상품을 의미합니다.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온라인 전용상품 수/해당 영업표지의 상품 수)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 · 연장 · 종료 · 해지 · 수정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 [해월당]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이며, 가맹계약 갱신시 계약기간은 [계약갱신일로부터] [1]년입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제40조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서비스 점검 및 경영상태 점검 결과 갱신 거절에 해당하는 경우 등)	
○ [해월당]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크게 합의해지, 일반해지, 즉시해지 등 3가지로 사유 및 절차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합의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 또는 귀하가 가맹점 개점 이후, 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상호 문서에 의하여 합의 해지 약정을 체결하고 본 계약을 중도해지 할 수 있습니다. 이의 경우, 당사 또는 귀하는 본 계약의 상대방에게 2개월 전에 그 취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상호 합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합의해지가 완료될 때까지는 본 계약에 의한 각자의 권리를 가지며, 각자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고, 상호 각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당사 또는 귀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 계약을 임의로 해지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사 또는 귀하는 각자의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일반해지 사유 및 절차

일반계약 해지 사유	
가맹본부의 상호 또는 상표를 불법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상품을 가맹사업 목적과 다른 방향으로 판매, 전용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직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본사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 경영지도 등을 계약기간 내 2회 이상 이수하지 않는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경업을 하거나 직원 등을 통하여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이 및 고객정보를 타인에게 유출할 우려가 객관적으로 높은 행위를 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연체한 원·부재료 대금 및 기타채무의 계약이행보증금 액수를 초과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2회 이상 정기납입경비의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매출액 또는 매출액 증가비율을 3회 이상 허위로 통지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노후된 점포설비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에 따른 교체, 보수 요청에 따르지 않는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감독 및 시정요구권에 의한 가맹본사의 시정요구를 받고도 3일 이내에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사의 동의 없이 임의로 상품을 변경, 추가하거나 가맹점본사에 의해 변경된 상품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자점매입 규정을 위반하여 자점매입하거나 타 업소에 제공 또는 판매하는 경우	41조 3항 1호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사가 정한 매뉴얼 기준에 따른 합리적 관리기준을 계약기간 내 2회 이상 위반하거나 당사의 가맹점 점검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동판촉활동에 동참을 거부하거나 가맹본사와 약정한 판매촉진활동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고객으로부터 불만사항을 접수받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당사와 협의없이 판매가격을 정하여 고객으로부터 반복적인 불만사항이 제기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사와 협의 없이 무단으로 3일 이상 휴업하거나 영업시간 규정을 3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가맹본사의 통일성과 제품의 품질관리기준을 2개월에 걸쳐 3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포인트 부정적립 등 기망행위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점포에서 운영하는 제품에 대한 유통기한의 고의적인 삭제, 변조 등 보관, 판매 및 운영상 반사회적인 행위를 하거나 관련 제반 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기타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을 위한 각종 설비와 인허가 등의 취득과 이행을 완료치 못한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서 제18조 제4항에 해당하여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 개점이 불가능한 경우	제 41조 3항 2호
가맹점사업자가 개점 전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가맹점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제 41조 3항 3호
가맹점사업자가 당사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가맹점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제 41조 3항 4호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당사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 41조 3항 5호
가맹점사업자가 당사의 사전 승인 없이 가맹점을 양도하는 경우	제 41조 3항 6호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 즉시해지 사유 및 절차

◇ 일반해지와 달리 가맹상버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즉시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제41조 4항
○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귀하의 동의를 얻어]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 수정 사유	
○ 가맹사업법의 개정 및 기타 본 계약과 관련된 법률이 제정 또는 개정된 경우 ○ 가맹사업의 통일화를 위한 영업방침이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를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 양도 · 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 당사는 환매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 고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 할 것	가맹점사업자가 30일 전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양수인은 교육비 및 계약이행 보증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원할 경우 당사는 양수인과 신규 가맹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규가맹계약일지라도 가맹점 모집비용, 개점행사비 등이 일반적인 신규가맹계약보다 적게 소요될 경우에는 비용 소요액에 상응하는 가맹금을 당사와 협의하여 지급하실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할 경우에는 당사에 사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구 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 차	기타 의무사항
상 속	상속 후 3개월 내 통지시 가능	모든 권리의무	가맹본부에 서면통지	교육수료 및 교육비 지급

대리행사	당사 승인시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지정한 범위 내의 권리의무	가맹점사업자가 소정의 양식을 갖추어 가맹본부 에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대리행사여부 통 지	
업무위탁	당사 승인시 가능	-	가맹점사업자가 소정의 양식을 갖추어 가맹본부 에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 → 업무위탁 여부 통지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 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 귀하가 [해월당]과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 고
베이커리, 카페 (타사 가맹점, 독립점포 및 가맹본부 경영 등)	당사는 계약기간 존속 중 경업을 허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문 의: 운영관리팀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 당사는 [해월당]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09:00 ~ 22:00	365일(연중무휴)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장 종업원수	직접근무 여부	대체 가능 인력	비 고
카페3명 베이커리3명	직접근무 권장	당사와 협의	-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감독 항목	감독 절차	빈도 및 시기	담당팀	비 고
식품위생관리	가맹점 내외부 및 기구설비 위생상태에 대한 점검	수시	가맹사업팀	
서비스평가	고객응대	수시	가맹사업팀	
품질유지관리	제품의 품질유지관리를 제빵사 교육 및 제품 점검	수시	가맹사업팀	

◇ 당사는 감독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맹점 관리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본 표는 감독이 끝난 후 귀하의 서명을 받아 가맹본부와 귀하가 각 1부씩 보관하게 됩니다.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 당사는 [해월당]영업표지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광고 성격	부담비율	분담 절차	비 고
-----	-------	------	-------	-----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공동광고	브랜드홍보 및 상품광고	광고비의 30%	광고비의 70% 중 전체 가맹점이 균분함	광고 계획 공고 → 가맹점의 광고참여 여부 결정 → 가맹점부담액 제시(명세서)	
	브랜드홍보 및 상품광고+가맹점 모집광고	광고비의 50%	광고비의 50% 중 전체 가맹점이 균분함		
	가맹점 모집광고	전액	없음		
공동판촉	행사에 따라 달라짐	기획비용	제작비용 및 상품할인비용	사전에 그 시행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갑에게 서면으로 통지→ 가맹본부의 승인 범위 내에서 시행	가맹점주의 70% 이상의 사전동의 충족시 실시
		기획, 제작비용 이외는 협의			

◇ 전국단위의 광고일 경우 가맹점부담액은 광고비 중 일부를 광고시행 직전 분기의 각 가맹점사업자의 총매출액 비율에 따라 분담합니다. 지역 광고일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부담액 부분을 분담합니다.

◇ 전체 가맹점의 매출 활성화를 위한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의 경우에 당사는 가맹점주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얻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판촉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별하게 필요한 절차는 없습니다. 다만, 브랜드 이미지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전에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조건부승인)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 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

사할 수 없습니다.

◇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당사가 귀하에게 제공하는 가맹계약서의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가맹점사업자가 **제29조(원·부재료 등의 조달과 관리)**를 위반하여 자점매입을 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에 위약별로 **일금이천만원(₩2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가맹점사업자가 **제11조(계약의 발효일과 계약기간)** 및 **제41조(계약의 해지)**를 지키지 않고 가맹점의 운영을 일시적으로 폐업처리하거나 [해월당] 영업표지를 사용하지 않는 점포로 운영 또는 양도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그 의무불이행의 기간에 대하여 **1일금이십만원(₩200,000)씩** 위약벌을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3)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기간 내 또는 계약종료 이후 **제43조(가맹점사업자의 비밀유지 및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 **일금이천만원(₩20,000,000원)**을 위약별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4)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의 종료 후 당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여 상호, 간판, 기타 표시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종료 익일부터 위약별로 **1일 금오십만원(₩500,000원)씩**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5) 당사의 지급요청일에 귀하가 위약벌을 지체하거나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대금에 대한 지급기한을 경과하면 미지급액에 대하여 가맹본부에게 지급기간 경과일의 다음날로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귀하는 연 이율 20%의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6) 당사는 이에 대한 채권 채무의 관계에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손해의 비용을 법무비용을 포함하여 당사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7) 당사 또는 당사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가맹본부는 손

해를 배상하도록 합니다.

8)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어자는 계약기간 중에도 서면에 의하여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해지할 수 있다. 다만, 해지를 원하는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1일당 일금일십만원(₩100,000)을 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 분	내 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60일 내외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참조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D-60	
사업 설명·상담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D-55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선정 -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D-41~42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D-40	
가맹금 예치	- 거래은행에 가맹금 예치	D-39(1일)	
점포실측/설계	- 투자비 산출	D-38~36(3일)	
실내외 공사착수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D-35(1일)	
인테리어 공사	- 공사 실시	D-35~5(30일)	
교육 실시	- 점포운영교육 실시	D-5~1(5일)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day	

◇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 개선사유	○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비용 항목	○ 간판교체 비용 ○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지급절차	○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분할지급 시 절차> ○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비용부담 제외사유	○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별도의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3. 경영활동 자문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 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 고
가맹본부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 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10일 이 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 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 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본부 부담	문의: 운영팀 (전화)052-224 -7700)
가맹점사업자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 (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 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 게 제시 → 경영지도 후 [10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 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 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 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점 부담 (가맹금에 포함된 통상의 경영지도 비용을 초과한 부분에 한함)	문의: 운영팀 (전화)052-224 -7700)

4. 신용 제공 등 내역

◇ 당사는 [해월당] 가맹점사업자를 위하여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 당사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VIII. 교육 · 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 · 훈련의 주요내용

◇ 당사는 [해월당]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 ·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비고
직무이론	해월당 시스템 이해 POS시스템이해(매출등록) 발주시스템이해(앱발주) 점포내외부 위생관리 서비스 마인드 및 고객응대표준 불만고객 응대 제품포장 및 진열	이론	가맹점 오픈전	필수교육
제조실습	반죽 성형 및 굽기 - 오븐 및 제빵도구 사용방법 교육 음료제조실습 - 음료재료 확인 및 장비 청소 - 커피 및 비커피류 제조실습	실습	가맹점 오픈전	필수교육

2. 교육 · 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 귀하가 [해월당]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 · 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 분	최소시간	비 용	비 고
최초(신규)교육	40시간	5,500	최초 계약시 이수 카페1명, 베이커리1명 (습득능력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될 수 있음)
정기(보수)교육	수시교육 8시간	필요시 산정	카페1명, 베이커리1명
	특별교육		
	재 교육		

3. 교육 · 훈련의 주체

- ◇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 ◇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 ◇ 또한, 가맹계약 당사자가 원하여 당사자 외 직원도 같이 교육을 받게 되면 인원 추가에 따라 비용도 추가됩니다.

4. 교육·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 ◇ 기한 내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기한내 신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본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본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벌점을 부여받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1	울산	일산점	울산광역시 동구 등대로 50
2	양산	호포점	경남 양산시 동면 양산대로 83
3	울산	언양점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봉화로 258-40
4	울산	간절곶점	울산광역시 울주군 간절곶1길8
5	울산	강동점	울산광역시 북구 동해안로 1586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 년, 개월)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1년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1,489,104	당사의 직영점의 연간평균 매출액은 직영점의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을 근거로 기재하였습니다.

◇ 바로 전 사업연도 기준 전국의 직영점 중에서 6개월 이상 영업한 가맹점의 매출액을 1년치로 환산하여 전체 연간평균 매출액을 추정하는데 근거수치로 포함하였으나, 실제 영업기간이 6개월 미만인 **강동점** 매출액은 1년치로 환산하여 전체 연간평균 매출액을 추정하는데 근거자료로 사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여 매출액 추정 근거자료로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표에서 기재한 연간 평균 매출액은 전체 직영점 수 5개가 아닌 실제 4개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추정 자료임을 알려드립니다.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 운영관리팀(Tel : 052-224-7700)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 (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 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별 지 >

- ①. 원부재료,상품 리스트
- ②. 용역/필수설비/집기 리스트
- ③. 주요 품목별 공급가격의 상,하한
- ④. 상품판매 리스트
- ⑤. 재무상황
- ⑥. 점포 예정지 인근 가맹점, 직영점 현황
- ⑦. 정보공개서 수령 확인서
- ⑧. 정보공개서 제공 확인서

[별지1] 원부재료, 상품 리스트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별지2] 용역/필수설비/집기 리스트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별지3] 주요 품목별 공급가격의 상,하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별지4] 상품판매 리스트

품번	상품명	판매가격
1	피자바게트	6,700
2	육쪽흑마늘빵	6,300
3	크루아상 트레디션	4,300
4	슈블랑	7,500
5	감자바게트	5,700
6	샤를르 바게트	5,700
7	앙버터 크루아상	5,800
8	몽블랑	6,800
9	파배기(3개입)	7,000
10	갈릭바게트	6,600
11	망고 크루아상	6,000
12	생크림 크루아상	6,000
13	블루베리 크루아상	6,000
14	우유식빵(小)	4,600
15	쉬폰	5,800
16	쇼콜라 클래식	6,500
17	샤보이	6,700
18	허니카스테라小	4,800
19	호두쉬폰	6,500

20	소프트카스테라	5,700
21	초코범벅	6,700
22	허니카스테라大	7,800
23	곡물(잡곡)식빵	5,800
24	크림치즈카카오	6,400
25	참쌀카스테라	5,800
26	모닝빵	4,000
27	호두파운드	7,300
28	밤식빵	7,700
29	카스테라파운드	5,900
30	생크림롤	12,000
31	초코가나슈롤	12,000
32	호두파운드(대)	13,000
33	얼그레이파운드	4,000
34	모카생크림롤	12,000
35	크림롤	12,000
36	레몬파운드大	13,000
37	레몬파운드	4,200
38	마스카포네 브라우니	4,500
39	티라미수롤	13,000
40	녹차롤	12,000
41	크런키롤	12,000
42	초코스콘	5,200
43	판콩슬레	5,800
44	밤만주	2,700
45	마카롱	3,000
46	두부과자	5,500
47	녹차스콘	5,200
48	영양모찌	5,300
49	호박만주	3,500
50	아몬드전병	5,500
51	블루베리스콘	5,200
52	치즈퐁듀	5,500
53	초코머핀	3,500
54	베이비 마들렌	5,000
55	누네띠네(4개입)	5,500
56	리얼 초코칩 쿠키	2,400
57	크랜베리스콘	5,200
58	레몬케이크	4,000
59	까눌레	3,300
60	마늘빵	6,300
61	아몬드치즈쿠키	2,500
62	초코만주	3,500
63	완두만주	7,800
64	베이비만주	7,800

65	계피만주	7,800
66	초코칩쿠키	7,300
67	쇼콜라프로켄트	7,500
68	체리쿠키	7,300
69	코코넛땅콩쿠키	7,300
70	헤이즐넛쿠키	7,300
71	머랭쿠키	7,000
72	시가롱	7,800
73	라즈베리쿠키	7,500
74	상투과자	7,300
75	마늘러스크	6,800
76	누가쿠키	6,800
77	오트밀 쿠키	7,300
78	치즈 데세르	7,800
79	카라멜러스크	6,800
80	불고기 고로케	3,400
81	소금빵	2,500
82	앙버터 소금빵	3,800
83	꽈배기	2,500
84	땡초 야채 고로케	3,000
85	초코소금빵	3,200
86	에멘탈 치즈 소금빵	3,200
87	모짜렐라 고로케	3,200
88	쪽파 소금빵	3,300
89	모카소금빵	3,200
90	츄러스	3,000
91	햄야채 고로케	3,000
92	잡채 고로케	3,000
93	숙덕숙덕	5,800
94	해월빵	6,500
95	파니니	5,200
96	롱 소세지	5,200
97	허니브레드	5,200
98	어니언크림치즈베이글	5,500
99	자색고구마	5,200
100	단팥빵	2,300
101	소시지피자빵	3,700
102	까망크렌치	5,500
103	카페모카빵	5,200
104	메이플	5,300
105	감자소세지	5,300
106	베이비슈	3,300
107	호밀빵(소)	4,000
108	옥수수마약빵	3,300
109	불고기 또띠아	5,200

110	호밀빵(대)	8,000
111	크림치즈조각타르트	11,000
112	요거트조각타르트	11,000
113	쇼콜라조각타르트	12,000
114	딸기조각타르트	13,000
115	블루베리조각타르트	11,000
116	조각마틸다쇼콜라케익	7,300
117	레드벨벳케이크	7,300
118	바스크치즈케이크	7,300
119	얼그레이가또쇼콜라	7,300
120	조각흑임자가또쇼콜라	7,300
121	쇼콜라바스크치즈케이크	7,300
122	쇼콜라브라우니	7,300
123	조각뉴욕치즈케이크	7,700
124	조각호두파이	7,300
125	스위트롤	9,300
126	에그타르트	3000
127	빨미에	5000
128	아몬드크루아상	5300
129	쇼송오뎀므	5500
130	소보루빵	2,300
131	홍국쌀식빵	5,800
132	오렌지쉬폰	3500
133	리프파이	3500
134	꿀고구마	3,000
135	아메리카노(H)	4,000
136	카페라떼(H)	5,000
137	바닐라라떼(H)	5,500
138	카페모카(H)	5,500
139	토피넛마끼아또(H)	6,500
140	바닐라 크림 콜드브루(I)	6,500
141	아메리카노(I)	4,000
142	카페라떼(I)	5,000
143	바닐라라떼(I)	5,500
144	카페모카(I)	5,500
145	토피넛마끼아또(I)	6,500
146	콜드브루(I)	6,000
147	에스프레소	3,800
148	요거트 스무디	6,000
149	꿀유자스무디	6,500
150	리얼초코라떼(H)	6,000
151	제주녹차라떼(H)	5,500
152	고구마라떼(H)	6,000
153	딸기라떼(I)	6,500
154	딸기 요거트 스무디	6,500

155	망고스무디	6,500
156	리얼초코라떼(l)	6,000
157	제주녹차라떼(l)	5,500
158	고구마라떼 (l)	6,000
159	사과 착즙주스	5,000
160	블루베리 요거트 스무디	6,500
161	우유	3,500
162	스팀우유	3,500
163	자몽에이드	6,500
164	자몽티	6,000
165	애플유자티(H)	6,500
166	아이스티	5,500
167	청포도에이드	6,500
168	꿀유자차(H)	6,000
169	애플유자티(l)	6,500
170	스페이스 오디티 (H)	5,500
171	비포 선셋 (H)	5,500
172	스페이스 오디티 (l)	5,500
173	비포 선셋 (l)	5,500
174	키위잼	9,000
175	딸기잼	9,000
176	블루베리잼	9,000

[별지5] 재무상황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별지6] 점포예정지 인근 가맹점, 직영점 현황

[별지7] 정보공개서 수령 확인서

□ 가맹희망자(가맹점사업자) 보관용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및 인근 가맹점현황 [제공 확인서]	
• 가맹본부명	
• 브랜드명	
[가맹희망자]	
① 성 명	[서명 또는 인]
② 주 소	
③ 전화번호	
④ 제공일시	년 월 일 시
⑤ 제공받은 장소	※ 구체적으로 기재 (가맹본부 사무실, oo 커피숍 내, 이메일 등)
⑥ 수령확인문구	상기 가맹희망자 본인은 '가맹사업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당 가맹사업의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및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를 정히 (수 령 하 였 음) ※ "수령하였음" 이라고 반드시 가맹희망자 자필로 기재요망
[가맹본부 제공 담당자]	
• 제공자명	[서명 또는 인]
※ 주의사항 : 가맹본부 담당자는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및 인근 가맹점현황 문서를 가맹 희망자에게 제공하고 ① ~ ⑥의 빈칸을 반드시 가맹희망자의 자필로 기재 하여야 합니다.	

[별지8] 정보공개서 제공 확인서

□ 가맹본부 보관용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및 인근 가맹점현황 [제공 확인서]	
• 가맹본부명	
• 브랜드명	
[가맹희망자]	
① 성 명	[서명 또는 인]
② 주 소	
③ 전화번호	
④ 제공일시	년 월 일 시
⑤ 제공받은 장소	※ 구체적으로 기재 (가맹본부 사무실, oo 커피숍 내, 이메일 등)
⑥ 수령확인문구	상기 가맹희망자 본인은 '가맹사업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당 가맹사업의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및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를 정히 (수 령 하 였 음) ※ "수령하였음" 이라고 반드시 가맹희망자 자필로 기재요망
[가맹본부 제공 담당자]	
• 제공자명	[서명 또는 인]
※ 주의사항 : 가맹본부 담당자는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및 인근 가맹점현황 문서를 가맹 희망자에게 제공하고 ① ~ ⑥의 빈칸을 반드시 가맹희망자의 자필로 기재 하여야 합니다.	

--